

#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7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주민 간 소통확대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시민 누구나 자기 마을을 소재로 미디어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·유통할 수 있도록 미디어 활용 교육 및 활동지원을 하는 시설임
- 나.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단체를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
- 소재지 : 성북구 길음로 7길 20(길음동 1286-8)
- 시설규모 : 396.32㎡(지상2층 303.37㎡, 지하1층 92.95㎡)
- 개관일자 : 2020. 6.(예정)
- 이용대상 : 마을미디어 활동단체 및 일반시민

### 나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20. 3.~2023. 2.)
- 위탁사무 :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- 마을미디어 주민지원사업 공모 및 운영
- 마을미디어 교육 및 컨설팅
- 마을미디어 제작 콘텐츠 표출, 홍보 및 유통 지원
- 기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##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「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6조, 제7조

○ 필요성

-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○ 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**제5조(시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6조, 제7조

제6조(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시장은 시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사무의 위탁) ①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예산 편성 추진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뉴미디어담당관 미디어기획팀 김훈영 (☎ 2133-6489)